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40호
2017년12월22일(금)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349호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7-350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

○ 여수시 고시 제2017-351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17-352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6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2467호 2018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 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17-2469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현천리 324-3] /14

○ 여수시 공고 제2017-2474호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5

회람								

여수시 고시 제2017-349호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

여수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 안 건 명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18년도 예산	'17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1,072,991,869**	**952,360,583**	**120,631,286**	**12.67%**
일 반 회 계	927,173,307	829,692,158	97,481,149	**11.75%**
특 별 회 계	145,818,562	122,668,425	23,150,137	**18.87%**

○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17년도 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18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조성규모
	수 입	지 출			
77,526,874	9,065,692	12,583,061	74,009,505	1,983,111	75,992,616

2017.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17-350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봉산동 200-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25)사업

나. 명 칭: 봉산동 어항단지 인근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492㎡

나. 규 모: L= 65m, B= 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 7.30. ~ 2017.12.31.
└ **변경: 2015. 7.30. ~ 201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8)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7-351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군자동 2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 군자동 동아일보 옆 소로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규모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 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105	군자동 283번지	군자동 296-3번지	일반 도로	
시 행	소로	3	29	6	국지도로	60	군자동 284번지	군자동 296번지	일반 도로	

나. 사업면적: 3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 5.31. ~ 2017.12.31.

└ 변경: 2015. 5.31. ~ 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8), 도시계획과(☎ 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고시 제2017-352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오천동 34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나. 명 칭: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총연장	금회시행				
중로	2	34	15	보조간선도로	790	10	오천동 107대	오천동 908-10도	일반도로	
소로	2	60	8	국지도로	223	9	오천동 368-1대	오천동 149-4대	일반도로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55	155	오천동 342-2전	오천동 360-2전	일반도로	
소로	2	2	8	국지도로	194	78	오천동 360-2전	오천동 381-1대	일반도로	
소로	2	68	8	국지도로	258	258	오천동 381-1대	오천동 107대	일반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4. 3.13. ~ 2017.12.31.

└ **변경: 2014. 3.13. ~ 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관계도서(변경없음): 도시계획과, 도로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8) 및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 2017-2467호

2018년 도시녹지관리원 모집 공고

도시숲·가로수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여 수 시 장

1. 사업내용

○ 도시숲·가로수 등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 자원조사 , 병해충 등 피해조사

○ 도시녹지실태조사 및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관리

○ 도시녹지관련 시스템 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단순 행정업무 지원은 불가

○ 병해충 방제, 피해목·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등

2. 자격 및 선발기준

○ 모집인원 : 1명

○ 연 령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장년층(만55세 이상) 우선 선발

○ 신청자격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발기준(우선순위)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동일 유형간(직접-직접) 반복 참여 제한 :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 예외 : 65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60~64세인 자 중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 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참여 신청자가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임금 지급

○ 임금(일당) : 60,240원

○ 주, 연차수당 지급

* 공고일 현재('17.12.22.)「2018년 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이 고시 되지 않아, 고시 후 임금 및 기타 변동사항에 대하여 별도 공지

4. 사업기간(계약기간) : '18. 1. 8일부터 '18. 12. 31일까지

* 단,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5. 모집방법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자격기준 및 경력)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 및 접수처 : 산림과 도시녹화팀(시전동 망마경기장내 1층)

- 공고문 첨부양식(신청서) 출력 사용 가능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7. 선발일정

○ 신청서 접수 : ‘17. 12. 22.(금) ~ ’17. 12. 29.(금) 18:00 / 5일간

○ 대상자 선정 및 통지안내 : ‘18. 1. 4.(목) / 선정자에 한해 유선 통보

8.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기술교육 이수증 1부 (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발결정 후에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림과 도시녹화팀(☎659-464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추후「2018년 재정지원일자리 종합 지침」고시 기준에 따라 임금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첨부서류

○ 도시녹지관리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 제1호 서식】

표준 사업신청서(도시녹지관리원사업)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성 명</td><td></td><td>남, 여</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d>연락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신청구분</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7">주요이력사항</td><td>최종학력 및 전공</td><td colspan="5">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td></tr>
<tr><td>산림 관련 자격 면허</td><td colspan="2">1.
2.
3.</td><td>임업 관련 교육 이수</td><td>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1. / 주
2. / 주
3. / 주</td><td></td></tr>
<tr><td>병역</td><td colspan="2">①필 ②미필 ③면제</td><td>복무기간</td><td colspan="2">년 개월</td></tr>
<tr><td>혼인</td><td>①기혼 ②미혼 ③기타</td><td>세대주</td><td colspan="2">①해당 ②해당없음</td><td>부양가족 (*세대인원)</td><td>인
(* 인)</td></tr>
<tr><td>취업 관련</td><td>①실직 ②미취업</td><td>실업 기간</td><td>년 월</td><td>전직업</td><td colspan="2">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td></tr>
<tr><td>신장</td><td>Cm</td><td>체중</td><td>Kg</td><td>교정시력</td><td>좌( ), 우( )</td><td>색맹 유, 무</td></tr>
<tr><td rowspan="2">기타 사항</td><td>주거상태</td><td colspan="5">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td></tr>
<tr><td>세대원 소득</td><td>월 만원</td><td>재산 상황</td><td colspan="3">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td></tr>
<tr><td>경력 사항</td><td colspan="6">①
②</td></tr>
<tr><td></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td><td colspan="5">기간 및 참여사업 :</td></tr>
<tr><td colspan="7">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td></tr>
</table>

【붙임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제2호 서식】

배 점 표(우선순위)

순위	구분	비고 (확인서류)
1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 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한자 : 5점	자격증, 교육이수증
2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해당한자 : 5점	졸업증명서
3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해당한자 : 5점	경력증명서
4	○ 연 령 1. 만55세이상~만60세이하 - 5점 2. 만18세이상~만35세이하 - 3점 3. 만36세이상~만54세이하 - 1점 ○ 컴퓨터, 전산 자격증 유무 1. 소 지 자 - 5점 2. 미소지자 - 1점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증

[여수시 공고 제2017 - 2469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324-3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39m	4m	156㎡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소라면 현천리	324-3 번지	39m	4m	156㎡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1.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7-2474호

공 고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분권의 정의(안 제2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

○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4조)

- (구성)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기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심의 등

- (운영) 협의회 운영 및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사업
- 협의회 운영 및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11.(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정승환(rokhwan@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하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여수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 또는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는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재정지원 및 주민참여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사업
2. 협의회 운영 및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등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풀뿌리 주민자치 촉진)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발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개선·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자치의 기반을 촉진하는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